소기업·소상공인들이 건실해지면
우리경제도 살아납니다.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조합 추천제도’ 안내자료

목 차

Ⅰ. 제도개요 ····· 1p

Ⅱ. 제도 활용방법 ····· 4p

Ⅲ. 주요 개선사항 ····· 13p

Ⅰ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조합 추천제도’ 개요

□ 제도개요

ㅇ 협동조합이 3개사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과 공동사업을 수행한 경우, 수요기관은 해당 제품을 ① **협동조합이 추천한 업체 간 지명경쟁** 또는 ② **제한경쟁** 형태로 구매 가능

– **대상제품**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204개 전체(금액제한 없음)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이외의 물품·용역(2.1억원 미만)

– **관련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3조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세칙」 제13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22조

ㅇ **(제도활용 가능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등 「판로지원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전체

ㅇ **공동사업이란?**(판로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

①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용역의 생산·제공 사업

② 협동조합이 보유하거나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소상공인이 공동으로 보유한 **특허권**을 활용하는 사업

③ **공동상표**의 도입·이용과 관련하여 「판로지원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업

④ 조합 또는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공통애로기술개발)**

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른 **협업사업**

ㅇ 공동사업 별 세부내용

공동사업명	사업소개
단체표준	ㅇ단체표준이란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품질 향상, 기술혁신, 생산효율 향상 등 산업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성능·절차·방법·기술 등에 대해 제정하는 기술표준 ㅇ협동조합은 국가기술표준원에 등록된 표준에 의해 업체들을 심사하여 일정 자격(설비·국제기준 부합 규정 보유 등)을 갖추고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인증을 발급하고, 주기적 사후관리 심사 실시
특허권	ㅇ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이 특허권을 적용하여 제품화하고 특허권자의 기술 이전을 통해 참여기업이 우수기술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으로서, 조합에서는 특허 전용실시권을 보유하고 해당업체에 통상실시권을 부여하며 특허 적용 제품에 대한 품질점검·사후관리 등을 실시
공동상표	ㅇ공동상표 개발 및 홍보를 위해 '중소기업유통센터' 지원 사업에 선발된 조합에 한해 사업 활용 가능 ㅇ협동조합은 심사를 통해 공동상표 참여기업을 선정하고, 수요기관 대상 설문조사·품질관리·기술개발 등 사후관리 실시
기술혁신촉진 지원사업	ㅇ협동조합이 중소기업청(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공통애로기술개발 포함)을 통해 개발한 혁신기술을 소기업·소상공인과 기술이전 등을 통해 공유하여 제품의 성능 향상
협업사업	ㅇ중소기업청 지원사업으로서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협업체'를 구성하여 R&D·제조·마케팅 등에 특화된 전문기업이 핵심 역량분야를 직접 수행하고 나머지는 상호간 협력하여 참여기업 간 자금과 위험을 분담하면서 제품생산 및 판로개척 지원

ㅇ 제도활용 장점

-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공동사업을 수행한 경우, 기술 및 노하우 공유, 사후관리를 통해 품질 향상 및 시너지 창출 효과로 일반입찰 대비 우수한 품질의 제품 구매 가능
- 공공기관에서 '수의계약'의 부담을 벗어나면서도 입찰을 통해 일정한 품질이 보장되는 제품 구매 가능

□ 제도 활용 현황

○ **지명경쟁·제한경쟁입찰을 통해 많은 수요기관들이 활용 중**

- 주요 제도 활용 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 상수도사업본부, 학교, 공공기관, 국회, 대법원, 중소기업중앙회 등

□ 제도 활용 협동조합

공동사업명	조합명
단체표준	가구(연), PC콘크리트암거(조), 건축물용역업(조), 금속(조), 금속탱크(조), 산업로(조), 석재(조), 전기(조) 전자(조), 조명(조), 주택가구(조), 콘크리트(연), 프라스틱(연), 활성탄소(조)
특허권	기계(연), 전기(조), 전자(조), 계측제어(조), 금속(조), 방송통신(조), 자동제어(조),
공동상표	광고물(연) 및 산하 지방조합(강원, 경기,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부산, 서울, 울산경남, 인천, 전북, 제주, 충북), 인쇄(연) 및 산하 지방조합(경기,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남, 부산, 서울, 울산경남, 인천, 전북, 제주) 엘리베이터(조), 전기(조), 전자(조), 펌프(조), 대구경북인쇄(조), 도자기타일(조),정보(조)
기술혁신 촉진사업	경기인천기계(조)

* '18.3월 기준, 활용 조합 및 제품 신규 업데이트 현황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접속 및 '정보조회' → '제품정보' → '소기업공동사업제품' 메뉴에서 확인 가능

Ⅱ 제도 활용방법

□ 지명경쟁입찰 활용절차

공공기관		공동사업 수행 소기업·소상공인		협동조합		공공기관
·공공구매종합 정보망 (smpp.go.kr) 통해 공동사업 수행 협동조합에 추천 요청	→	·요청정보 검색 ·추천신청 (입찰금액 기재)	→	·추천신청 업체 공공기관 요청사항 적합여부 검토 ·적정업체 추천	→	·지명경쟁 공고 ·낙찰자결정 후 계약

ㅇ 조합 추천방식

- **(현행 : 선착순 추천방식)** 협동조합은 추천신청 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청 선착순'으로 추천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수요기관에서 요청한 업체 수만큼 적정업체를 추천

- **(추가예정 : 랜덤 추천방식)** 협동조합에서 추천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부적정 업체를 제외하고 수요기관에서 요청한 업체 수의 3배수를 선착순으로 선발하여 자동추첨 방식으로 추천 대상업체를 최종 선정

ㅇ 제도 활용가능 제품 및 조합·업체 확인

①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접속 → ② '정보조회' → ③ '제품정보' → ④ '소기업공동사업제품'

ㅇ 세부 활용방법 안내 매뉴얼

(1)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접속 및 로그인

(2) ① '나의업무' → ② '공동사업제품추천' → ③ 추천희망 공동사업명 클릭 → ④ '우선조달요청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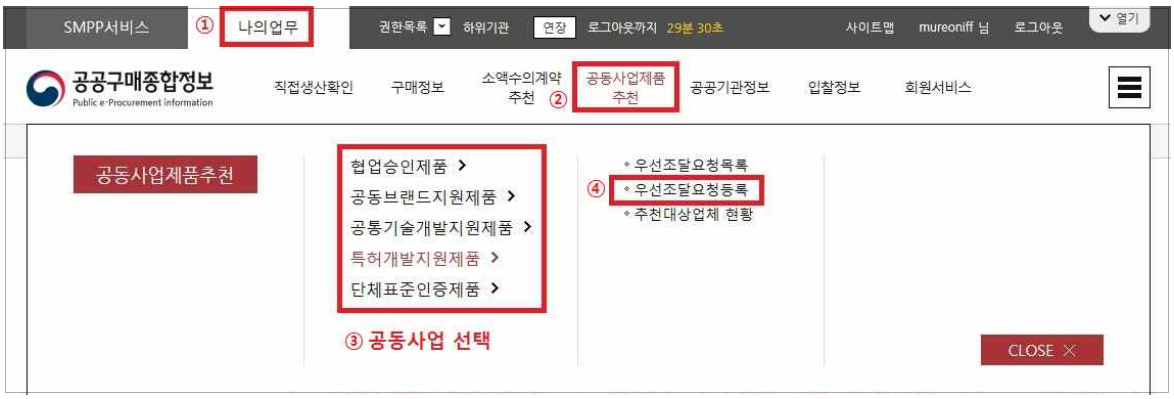

(3) 추천요청 기관정보, 공고명 입력

(4) 세부품명, 품목별 추정가격 입력(추정가격은 업체별 입찰금액의 기초가 되므로 되도록 기초금액에 가깝게 작성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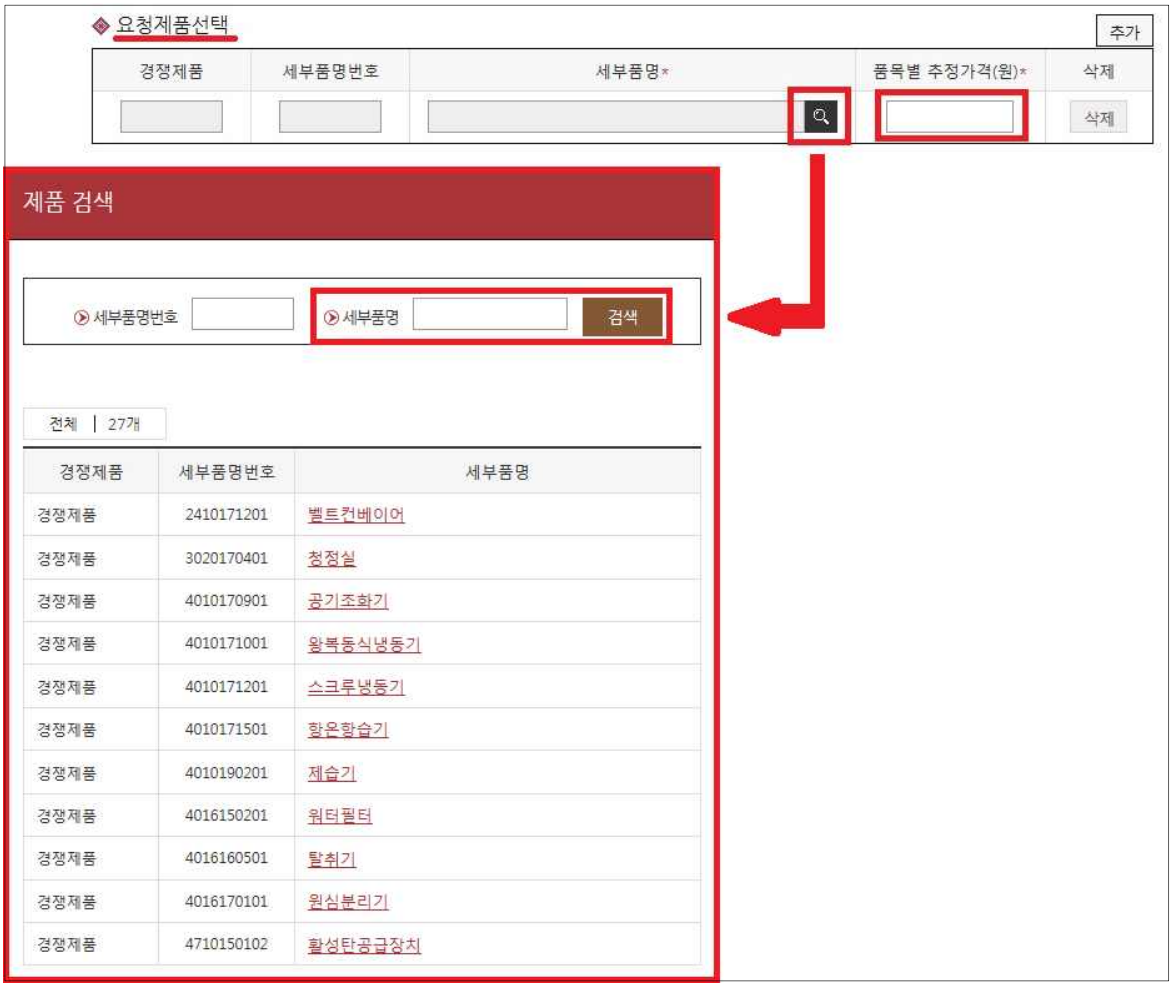

(5) 추천요청 협동조합 선택(해당 제품 추천 가능한 업체 자동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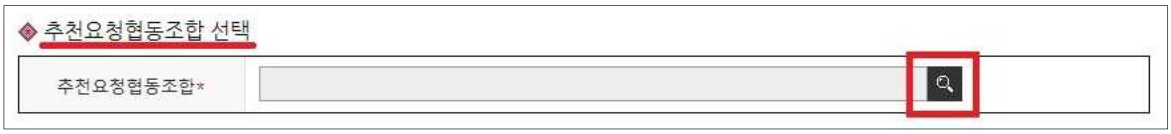

(6) ① 실수요기관 선택·입력 → ② 추정가격 합계 자동입력 → ③ 추천기한(수요기관에서 최종 추천받고자 하는 일자) 입력 → ④ 추천요청 업체 수 입력(5개 이상) → ⑤ 첨부파일(시방서, 내역서 등) 첨부 → ⑥ 기타 요구사항 입력 → ⑦ 등록

□ 제한경쟁입찰 활용절차

○ 공고문 내 입찰참가자격을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하여 구매 진행

[입찰참가자격 예시]

○○○협동조합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수요기관 나라장터 이용방법

ㅇ 직접 입찰공고 게시(지명경쟁입찰 및 제한경쟁입찰)

(1) ①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접속 및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물품" 클릭 → ② "입찰공고" 클릭 → ③ "입찰공고 입력" 클릭 → ④ "신규입력" 클릭

(2) 조합추천 이후 '지명경쟁입찰' 시 : "지명(총액)" 클릭
'제한경쟁입찰' 시 : "제한(총액)"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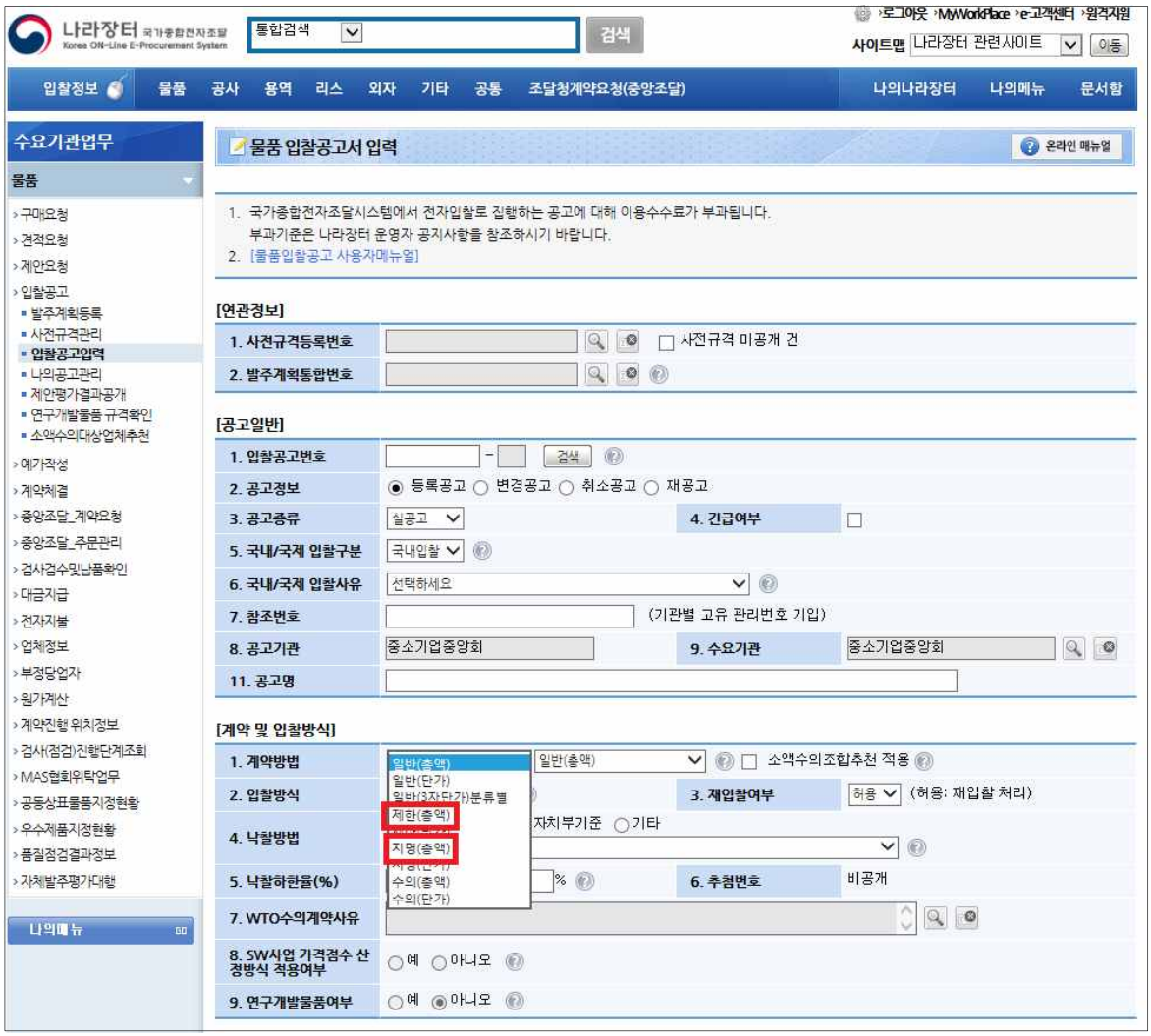

ㅇ 조달청 위탁구매 활용방법

- **조달청 위탁구매 대상 공동사업** : 「판로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 활용 범위 중 일부에 한해 활용

[공동사업제품 조달요청 대상]

구분	적용금액	적용대상(공동사업)
중기간경쟁제품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 조합추천 지명경쟁은 고시금액 (2.1억원) 미만에 한해 가능 **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구매 시 수요기관 자체 구매 가능	①R&D 중심형 협업사업 ②구매업무심의회 승인 공동상표 ③심의위원회 승인 특허권 활용사업 ④기술혁신 촉진사업 ⑤우수단체표준 * 용역의 경우 단체표준 허용
일반제품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 **조달요청서 제출 시 '공동사업제품 구매 요청 여부 및 계약방법' 기재**

(1)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접속 및 로그인

(2)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물품” 클릭

(3) ① “중앙조달_계약요청” 메뉴 클릭 → ② “물품구매일반용역계약요청” 클릭 → ③ “내자계약요청서”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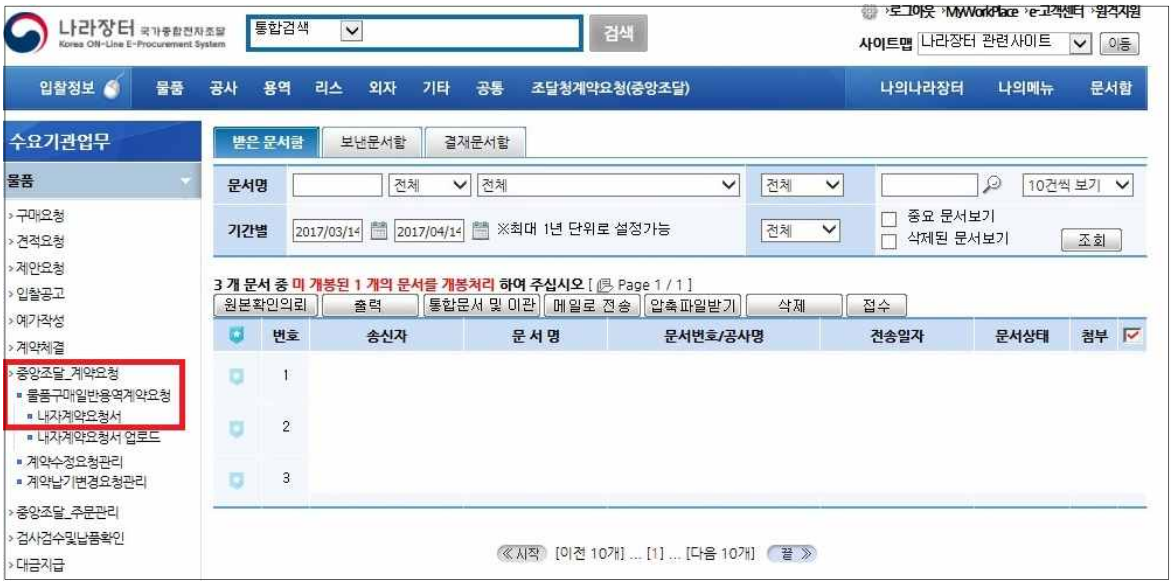

(4) “작성” 클릭하여 내자계약요청서 작성 시작

(5) 기타내용 입력 후 “계약방법”에서, “지명경쟁”(협동조합의 추천을 받은 경우) 또는 “제한경쟁” 선택

(6) “요청내용” 작성 중 “공동사업제품계약여부”에서 “소기업·소상공인 제한경쟁” 또는 “조합추천 지명경쟁” 중 필수 택 1하여 작성하고 기타사항 작성 후 최종 “등록” 저장 클릭

□ 공동사업제품 등록현황

(‘18.3월 현재, 계속 업데이트 중)

공동사업명	조합명	제품명
단체표준	가구(연)	책상, 사물함, 캐비닛 등 38개
	PC콘크리트암거(조)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
	건축물용역업(조)	건물청소, 시설물경비서비스
	금속(조)	이동식초소, 버스승강장 등 13개
	금속탱크(조)	물탱크, 온수탱크
	산업로(조)	온풍난방기
	석재(조)	조경석, 경계석, 판석
	전기(조)	폐쇄형배전반, 태양광발전장치 등 9개
	전자(조)	무선송수신기, 양방향라디오
	조명(조)	가로등기구, 보안등기구 등 13개
	주택가구(조)	싱크대·조리대, 신발장 등 6개
	콘크리트(연)	호안및옹벽블록, 배수로관, 콘크리트기초
	프라스틱(연)	플라스틱계맨홀
	활성탄소(조)	활성탄
특허권	기계(연)	무대장치, 공기조화기, 슬러지수집기 등 23개
	전기(조)	폐쇄형배전반, 분전반, 전동기제어반
	전자(조)	안내전광판
	계측제어(조)	계장제어장치
	금속(조)	파형강관·이음관
	방송통신(조)	통합배선반
	자동제어(조)	계장제어장치
공동상표	펌프(조)	수중펌프, 입축사류펌프 등 22개
	광고물(연) 및 산하 지방조합	간판, 안내판, 전시대 등 13개
	인쇄(연) 및 산하 지방조합	수첩, 달력, 기타인쇄물, 팸플릿 등 31개
	엘리베이터(조)	승객용·화물용엘리베이터 등 4개
	전기(조)	폐쇄형배전반, 주상변압기 등 18개
	전자(조)	구내방송장치
	대구경북인쇄(조)	수첩, 달력, 기타인쇄물, 팸플릿 등 20개
	정보(조)	전산업무
	도자기타일(조)	타일
기술혁신 촉진사업	경기인천기계(조)	공기조화기, 항온항습기 등 27개

Ⅲ 주요 개선사항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추천제도 활성화

o 행자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제도 활용 근거마련('16.11.29 개정)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 및 제9호의 제한사항별 제한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1~10호 생략) **1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해당 물품 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22조(지명입찰에 의할 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명입찰에 부칠 수 있다. **1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해당 물품 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o 중기청, 제도 세부 운영규정 마련을 위한 고시 개정('16.10.13)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3조 개정

o 조달청, 제도 활용 위한 구매처리지침 시행('17.1.16)

– 조달청 통한 위탁구매 가능

– 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와 기술개발을 지원 및 경쟁성 제한 문제 최소화·공정한 제도 운영 지향

o 중앙회, '공동사업 특허권 심의위원회'(조달청 요구사항) 운영근거 마련('17.1.18)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세칙」 제13조 신설

o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제도 활용 근거마련 ('18.3.6 개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및 제23조(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에 제도 활용 근거 마련 완료

[붙임 1 : 관련 법령]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구매 증대) ①공공기관의 장은 물품·용역 및 공사(이하 "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受注) 기회가 늘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 ①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체결하여야 하는 조달계약(이하 "우선 조달계약"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추정가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억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라 한다)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에 참가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2인 미만이거나 2인 이상이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流札)된 경우에는 중소기업자(법 제2조제1호나목의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조의3에서 같다)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	제1조의2(공동사업) 영 제2조의2제1항제3호 본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른 **협업사업** 2. **공동상표**의 도입 또는 이용과 관련하여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업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보유하거나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보유한 **특허권**을 활용하는 사업 4. 조합 또는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으로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5.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용역의 생산·제공 사업

제7조의2(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경쟁제품 조달계약에 관한 특례)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쟁제품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셋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조합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이하 "공동사업"이라 한다)을 하여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을 제품화한 경우 해당 물품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방법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해당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 **2. 공공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해당 물품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명경쟁입찰**	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물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을 통하여 제품화한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조합에 요청하여 공동사업의 주체인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추천받은 경우에는 추천받은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중에서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계약 상대자를 결정할 때에는 법 제7조제2항과 이 영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며, 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8조제4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조합으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는 연간횟수, 연간 계약 한도, 추천방법 및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조달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ㅇ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3조(공동사업 참여 소기업 등에 대한 조합 추천) ① 규칙 제1조의2의 공동사업 참여 제조 소기업 등을 영 제2조의2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추천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은 공동사업 수행으로 제품화한 해당 물품 등의 **증빙서류를 중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중앙회장은 이를 확인한 후 구매정보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합으로부터 업체를 추천받아 지명경쟁을 통해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구매정보망에 설치된 공동사업제품 추천시스템을 통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공동사업제품 지명경쟁 대상 업체의 추천을 요청할 때에는 해당 제품 명칭 및 추천기준, 추정가격, 추천요청 조합 명칭, 추천업체 수, 업체의 신청기간, 조합의 추천기한 등 추천에 필요한 사항을 공동사업제품 추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공동사업제품 지명경쟁계약에 참여하려는 제조 소기업 등은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공동사업제품 추천시스템에 입력한 정보를 확인하여 **신청기간 이내에 공동사업제품 추천시스템에 입찰금액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제출한 입찰금액은 수요기관이 기초금액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 이후 실시하는 수요기관의 입찰 시 변경할 수 없다. ⑤ 공동사업 지명경쟁 대상 업체의 추천을 요청받은 협동조합은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해당 업체의 직접생산 능력, 업체별 연간 추천횟수와 연간계약한도, 공공기관의 추천요청사항 등 추천에 필요한 요건에 맞는 기업을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제조 소기업 등의 신청 순서에 따라 공공기관이 지정한 종료일까지 공동사업제품 추천시스템을 통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1. 규칙 제1조의2의 공동사업을 통해 제품화한 물품 또는 용역을 생산하는 업체를 추천하여야 한다. 2. 유효한 경쟁입찰이 실시될 수 있도록 최소 5개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적정자격을 갖춘 신청 업체가 3개 또는 4개 뿐인 경우에는 신청업체수 모두를 추천할 수 있으며, 2개 미만인 경우 추천할 수 없다. 3. 명확한 이유가 없는 한 상위신청자를 추천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제외한 경우 그 사유를 해당 신청자에게 알리고 추천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추천한 날부터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⑥ 조합은 추천이 편중되지 아니하고 투명하게 되도록 세부품목별, 업체별 연간 추천횟수와 연간계약한도 등을 정한 **연간 추천계획서를 매년 3월15일까지 총회 의결을 거쳐 확정 후 중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중앙회장은 각 조합이 제출한 연간 추천계획서를 조합별, 업체별, 품목별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조합의 의견을 들어 조정한 후 이를 매년 3월말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청장은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연간 추천계획서를 확정**하여야 한다.

⑧ 중앙회장은 확정된 **연간 추천계획서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년 3월말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하며, **공동사업 제품 추천시스템을 공정하게 운영·관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⑨ 중소기업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추천 또는 신청을 한 조합 또는 제조 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별표 4에 따라 추천 및 신청을 제한**하여야 한다.
⑩ 법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공동사업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제1항부터 9항까지 규정을 적용한다.
⑪ 공공기관의 장은 공동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세부운영규정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위법 또는 부당 행위에 따른 추천.신청 제한]

구 분	위법 또는 부당행위	위법 또는 부당행위 횟수별 추천 및 신청 제한기간			비 고
		1회	2회	3회	
협동조합	- 부적격한 업체를 추천한 경우 - 적격한 업체를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 신청 순서에 따라 심사하지 아니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추천기한내에 추천을 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관련법령 또는 규정에서 정한 추천절차와 방법에 따라 추천을 하지 아니한 경우	1년	2년	영구퇴출	- 해당조합별 제한
중소기업	- 허위의 추천심사 자료를 제출한 경우 - 관련 법령 또는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기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신청·추천·입찰 등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1년	2년	영구퇴출	- 해당업체별 제한

* 위법 또는 부당행위 횟수 산정은 최종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최근 5년간 위반한 횟수를 말한다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 및 제9호의 제한사항별 제한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1~10호 생략) **1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해당 물품 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22조(지명입찰에 의할 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명입찰에 부칠 수 있다. **1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해당 물품 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 참고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제도"

- **(제도개요)** 대기업제품, 수입제품의 납품 및 하도급 생산납품 등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할 시 해당 중소기업의 직접생산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 **(관련조항)** 「판로지원법」 제9조·제11조
- **(확인대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조·생산 중소기업
- **(확인기준)** 주요설비 및 장비, 최소 공장면적, 최소 필요인원, 필수자격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청장이 고시
- **(유효기간)** 2년
- **(확인절차)**

[붙임 2 : 제도 활용 협조요청 중소기업청·본회 공문]

중소기업을 건강하게, 소상공인을 따뜻하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수 신 수신자 참조
(경 유)
제 목 공동사업 조합추천제도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공동사업 조합추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공동사업 조합추천제도 :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함께 공동사업을 통하여 제품화한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 해당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 또는 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제도

3. 조합과 함께 공동사업을 통하여 제품화한 물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동 제도를 활용해 수주기회가 늘어날 수 있도록 조달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사업 조합추천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2016-61호) 제43조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장

수신자 01.국가기관, 02.광역자치단체, 03.기초자치단체, 04.시도교육청, 05.공기업, 06.준정부기관, 07.기타공공기관, 08.지방공기업, 09.특별법인

주무관 김중집 전산사무관 안태용 공공구매 전결 11/02 판로과장 이현조

협조자

시행 공공구매판로과-4138 (2016-11-02) 접수 판로지원부-3231 (2016-11-04)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 http://www.smba.go.kr

전화 042-481-4546 전송 042-472-7932 / redswap@korea.kr / 공개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우리가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합니다"

KBIZ 중소기업중앙회

수 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조합 추천제도' 활용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시다시피 대내외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영세 소기업·소상공인들의 판로확보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에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범정부적 판로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위해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조합 추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소기업 공동사업 우선구매제도)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함께 공동사업을 통하여 제품화한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 해당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 또는 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제도

4. 특히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기업 공동사업제품의 제한경쟁(제20조)·지명경쟁(제22조) 근거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기업·소상공인의 수주확대 및 공동사업을 통한 기술·품질개발을 적극 도모하고 있습니다.(세부내용 붙임참조)

5. 이에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인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내수침체에 따른 경영난을 극복하고 경제 활성화의 일익을 담당해나갈 수 있도록 동 제도 활용을 안내드리오니 붙임자료를 참고하시어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제도 안내자료 1부

* 붙임자료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 상단메뉴 "알림마당"-"자료실" 115번 게시글 참조. 끝.

중소기업중앙회장

수신자 국가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특별법인

전결
과장 최가람 부장 04/14
양갑수

수신담당

예산통제

협조자

시행 판로지원부-1312 (2017.04.14) 접수

우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 www.kbiz.or.kr
전화 02-2124-3246 전송 02-783-4909 / mureoniff@kbiz.or.kr / 공개

[붙임 3 : 경제부총리와의 간담회 보도자료]

아주경제

2017년 03월 23일 목요일 006면 종합

중기중앙회,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간담회

"소기업제품 우선구매 활성화하겠다"

박성택회장, 정부지원 약속받아내 적합업종 등 정책 과제 20건 건의

대선 정국 돌입 이후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이번엔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만나 '소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제도 활성화 지원' 등을 이끌어냈다. 또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해선 오는 6월 내 결정을 낼 것이란 확답을 받았다.

박성택 회장은 22일 중기중앙회 본관 이사회 회의실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를 갖고, 경제활성화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현장의 정책과제 20건을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유 부총리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기업청의 실·국장급 등이 참석했다.

여기서 유 부총리는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지원' 건의와 관련, "조속한 시일 내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함께 참석한 위성백 기재부 국고국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해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해 기대감을 높였다.

이 제도는 활용 근거가 '국가계약법령'에 없어 사실상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했었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시행령안에 활용 근거 신설을 요청해 왔고, 이날 정부로부터 긍정적인 답을 얻은 것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분야 최대 이슈인 '적합업종 기간만료 연장 및 생계형업종 법안 마련' 건의에도 관심이 모아졌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이와 관련, "특별법 재정문제는 중기청에서 관련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며 "그 결과가 나오면 제도의 실효성과 외부의 시각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상반기 중에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올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67개 권고기간이 만료 예정으로 기간 연장을 요청한 상태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고 있다.

이외 박 회장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 확대 △해외전시회 사업 지속 수행 및 지원 확대 △여성벤처창업자 육성 및 발굴시스템 구축 △단체표준 인증제품 판로 지원 실효성 제고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행위의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장기납입자 세제지원 등을 촉구했다.

유 부총리는 "창의성과 민첩성을 갖춘 우리 중소·벤처기업이 국가 혁신역량을 결정하는 주역이 될 것"이라며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의 생업안전망 확충,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스마트공장 도입 및 고도화와 개방형 R&D 생태계 구축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경제 정책을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꾸는 경제구조의 새로운 개혁을 통해 중소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크게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회장은 대통령 탄핵 직후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시작으로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난 데 이어, 이날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국회·정부 최고위급과 연달아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후 각 정당 대표는 물론 대선 주자들과도 간담회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송창범 기자 kja33@

[붙임 4 : 문의·연락처]

연번	기관명	연락처	연번	기관명	연락처
1	중소기업중앙회	02-2124-3246	25	서울알루미늄(조)	02-783-6737
2	가구(연)	02-2215-8838	26	강원도광고물(조)	033-255-6783
3	인쇄(연)	02-335-6161	27	경기도광고물(조)	031-254-6250
4	광고물(연)	02-2635-2270	28	광주전남제일광고물(조)	062-527-4771
5	기계(연)	02-3481-9900	29	대구경북광고물(조)	053-257-9953
6	콘크리트(연)	02-2241-7381	30	대전세종충남광고물(조)	042-584-4501
7	프라스틱(연)	02-2280-8251	31	부산시광고물(조)	051-803-1282
8	PC콘크리트암거(조)	031-247-4775	32	서울광고물(조)	02-922-7861
9	건축물(조)	02-2069-2460	33	울산경남광고물(조)	055-268-6388
10	계측제어(조)	02-853-2623	34	인천광고물(조)	032-203-1000
11	금속(조)	02-780-4411	35	전북광고물(조)	063-271-8080
12	금속탱크(조)	02-2632-1580	36	제주특별자치도광고물(조)	064-752-8754
13	방송통신(조)	02-336-3670	37	충북광고물(조)	043-288-4133
14	산업로(조)	02-872-3593	38	경기도인쇄(조)	031-253-3311
15	석재(조)	02-565-0631	39	광주전남인쇄(조)	062-222-4414
16	자동제어(조)	02-582-7833	40	대전세종충남인쇄(조)	042-256-3227
17	전기(조)	031-724-6141	41	부산인쇄(조)	051-468-2468
18	전자(조)	02-597-9412	42	서울인쇄(조)	02-333-8631
19	조명(조)	02-2676-9891	43	울산경남인쇄(조)	055-268-6789
20	주택가구(조)	02-855-5871	44	인천인쇄(조)	032-881-3381
21	펌프(조)	031-957-5850	45	제주특별자치도인쇄(조)	064-722-6435
22	활성탄소(조)	02-784-9825	46	전북인쇄(조)	063-284-5081
23	엘리베이터(조)	031-292-4686	47	대구경북인쇄(조)	053-424-0793
24	경기인천기계(조)	031-928-6454			